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37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4월 20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 4. 20.~ 5. 3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대상자 주소
1	이승준	1980.○.02	0178200274100005433	₩2,701,120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○○
2	김군자	1943.○.20	0178200274100001794	₩22,302,000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○○
3	신경숙	1987.○.20	0178200274100003934	₩7,434,000	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 ○○
4	권은주	1966.○.18.	0178200274100005604	₩31,500,000	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○○
5	박태남	1957.○.06.	0178210274100001947 0178210274100001948	₩20,520,000 ₩1,296,000	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입고로 ○○
6	(주)한국경매피 앤디	134111-0428545	0178200274100005541 0178210274100003242 0178210274100003271	₩13,275,000 ₩7,650,000 ₩17,543,750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6, 901호(안양동, 금강빌딩)
7	(주)나이스네트 웍	110111-4302412	0178200274100010699 0178200274100010677 0178200274100006143 0178200274100005235 0178200274100005193 0178200274100005192	₩3,283,200 ₩855,000 ₩53,100,000 ₩53,100,000 ₩23,895,000 ₩11,947,500	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(양재동)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대상자 주소
8	글로벌셀러아카데미(주)	110111-4558867	0178200274100009048 0178200274100006076 0178200274100004381	₩19,410,000 ₩6,637,500 ₩23,730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11, 2층(논현동, 축선빌딩)
9	강진석	1974..○11.	0178200274100006077	₩6,637,500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○○
10	유한회사 엠케이원	135814-0003445	0178200274100005288	₩6,637,500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(영통동, 평익빌딩 4층 410호)
11	이재민	1986..○.27	0178200274100001935	₩6,637,500	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○○
12	(주)가온레저 산업	110111-3627126	0178200274100006547 0178200274100005373	₩17,841,600 ₩6,637,500	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5길 9-6, 302호(개포동, 방주빌딩)
13	디지털파이넥스코 리아(주)	110111-7084215	0178230274100001049	₩3,750,000	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○○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

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, ☎ 02-6735-8139, 8141, 8142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